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김영배

정준호 • 이수진 • 문정복

이연희 · 김용민 · 어기구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 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 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로, "할 때"를 "하기 전"으로, "요청할 때를"을 "요청하기 전을"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예고(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하는 심사 요청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기간 이내에"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및 부령"을 "·부령과 그 입법예고안"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를 "대통령령등이"로,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

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령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예고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등)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 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 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 ----대통령령·총리령·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 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 요청하기 전을-----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제출하여야 하 며,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날로 한다. 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예고(입 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하는 심사 요청 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②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에 따라-----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 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 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 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 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 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 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한다.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 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 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③
<u>· 부령</u>
과 그 입법예고안
4
<u>대통령령등이</u>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공한다. 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u>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삭 제></u>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 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공한다.

<삭 제>

<삭 제>